

제4기  
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 
분야별 제도개선  
건의 현황 ('21~'23)

- 친환경차 · 선박 분야 -



# CONTENTS



##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('21~'23)

※ 해당 자료는 '21~'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, '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

### ■ 친환경차 · 선박 분야 (3건)

- 선박 내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 부재
-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
- 전기차 화재 발생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

# 선박 내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 부재

친환경차·선박 분야

## 애로내용

연료절감 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성적서를 받으려면 연료절감 장치에 관하여 기준 및 인증체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인증체계가 부재하여 성적서 발급이 어려움

## 건의결과



친환경 선박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하고,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기자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기자재 관련 인증기준과 인센티브 방안(공공선박 우선적용 등)을 마련

\*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('21.12)

소관부처: 해양수산부

## 개선/파급효과



- 구체적인 인증기준 마련으로 국내기업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개발 의욕 고취
- 미래 글로벌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수준 선도에 기여
- 배출저감장치 장착 선박 대상 입자상물질 약 60%이상 저감 기대

신원융합혁신 업무즈만

#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

친환경차·선박 분야

## 애로내용

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장치 비치 여부 및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, 개발되어 있는 소화장치가 있음에도 비치하지 못함에 따라,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 발생

## 건의결과



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검증 후,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 제·개정 등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 허용

\* 소화기의 진압 효과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소관기관 간 검토 후,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·기준 제·개정 등에 따라 '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·운영 지침'에 반영 예정(~'24.12)

소관부처: 환경부

신원융합혁신 업무즈만

# 전기차 화재 발생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

친환경차 · 선박 분야

## 애로내용

해당 기준에서 화재의 유형과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,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,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

## 건의결과



현재 소화기로는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의 내용 수용 곤란

\*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

소관부처: 소방청

 산업융합촉진 ombudsman

 산업융합촉진  
ombudsman

※ (참고)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에서는  
융합·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·애로 해소를 지원하고,  
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 
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위 내용 관련하여

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,  
"1670-9050" / "hyelim0507@kitech.re.kr"으로 문의  
또는 <https://www.oico.kr/>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

 산업융합촉진 ombudsman